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127
~~제50호~~

제출년월일 : 2011. 5. 4.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는 1993. 7. 27에 제정하고 2007. 11. 8에 일부 개정하였으나, 최근 공공도서관의 증가 등 도서관 여건등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적정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서관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나. 도서관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변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안 제6조).
- 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직무를 심의에서 심의 또는 자문으로 조정(안 제12조).
- 라.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항 신설(안 제19조).
- 마. 신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새 주소 표기방법으로 변경 (안 제1조의2 관련 별표 1)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도서관법 제2조
- 도서관법 제31조, 제32조
- 도서관법시행령 제19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회원증 발급 수수료, 강습·교육 수수료)을 말한다.

5. “도서관장”이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및 각 분관, 어린이도서관의장을 말한다.

제3조 중 “납부하여야”를 “내야”로 한다.

제4조 중 “도서관장”을 “도서관장은”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을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제7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 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해야 하고 동일 도서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市價)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다고 해당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하고자 하는 자”를 “위탁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도서관 소장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

에 따라” 를 “위탁자가 청구하거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으로 한다.

제9조 중 “등재한 후” 를 “올린 후”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의”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2조 중 “심의한다” 는 “심의 또는 자문한다” 로 하고,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 로 한다.

제16조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 시장은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중앙도서관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담당·팀장 직위·성명	열람담당 류현선
	담당자 성명·전화	이경일 (행정 2707)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1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감골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사동)	
성포분관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28(성포동)	
부곡분관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33(부곡동)	
상록어린이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로 45(일동)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고잔동)	
관산분관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원곡동)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30(초지동)	
안산동꿈을주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반월햇빛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남산평1길 10(팔곡일동)	
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영화5길 15(사동)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	
신길샛별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55(신길동)	
석수골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9길 20(선부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u>도서관 자료</u>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스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p> <p>2. <삭제> 2007. 11.08></p> <p>3. <u>대출</u>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p> <p>4. <u>시설사용료</u>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p> <p>5. "도서관장"이라 함은 중앙도서관 및 분관의장을 말한다.</p> <p>제3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p> <p>제4조(입관의 제한) <u>도서관장</u>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p> <p>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p> <p>3. --- 이란----- .</p> <p>4. <u>사용료</u>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회원증 발급 수수료, 강습·교육 수수료)을 말한다.</p> <p>5. "도서관장"이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및 각 분관, 어린이도서관의장을 말한다.</p> <p>제3조(사용료) ----- 내야 ----- .</p> <p>제4조(입관의 제한) <u>도서관장</u>은----- .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p>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변상)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케하고 동일도서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당해 도서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 (1)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해야 하고 동일 도서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市價)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다고 해당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7조(대출)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7조(대출) ----- 대해서는 ----- -----.
제8조(위탁자료) (1)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위탁자료) (1) ----- ----- 위탁하려는 자----- ----- -----. (2) ----- 도서관 자료----- ----- 위탁자가 청구하거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제9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기증도서 관리) ----- ----- 올린 후----- -----.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생략)</p> <p>(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p> <p>(3)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이용시민,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4) 시장은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2) -----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 .</p> <p>(3) ----- .</p> <p>-----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4) ----- 그 밖의 ----- .</p>
<p>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생략)</p> <p>(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p>	<p>제12조(위원회의 직무) -----</p> <p>----- 심의 또는 자문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 .</p>
<p>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p> <p>(1) (생략)</p> <p>(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p> <p>(1) (현행과 같음)</p> <p>(2) ---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p>
<p>제14조(위원회 회의등)</p> <p>(1) ~ (2) (생략)</p> <p>(3) 중앙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위원회 회의등)</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대해서는 ----- .</p>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대해서는 범위에서 .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대 해서는 .																																																															
〈신 설〉	제19조(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 시장은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필요한 .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1조의 2 관련)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1조의 2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위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중앙도서관</td> <td>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길 197(고잔동)</td> <td></td> </tr> <tr> <td>중앙도서관 관산분관</td> <td>안산시 단원구 도서관길 27(원곡동)</td> <td></td> </tr> <tr> <td>중앙도서관 성포분관</td> <td>안산시 상록구 노직봉길 70(성포동)</td> <td></td> </tr> <tr> <td>중앙도서관 감골분관</td> <td>안산시 상록구 문학길 1(사동)</td> <td></td> </tr> <tr> <td>중앙도서관 상록어린이분관</td> <td>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길 39(일동)</td> <td></td> </tr> <tr> <td>중앙도서관 단원여린이분관</td> <td>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길 109(초지동)</td> <td></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비고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길 197(고잔동)		중앙도서관 관산분관	안산시 단원구 도서관길 27(원곡동)		중앙도서관 성포분관	안산시 상록구 노직봉길 70(성포동)		중앙도서관 감골분관	안산시 상록구 문학길 1(사동)		중앙도서관 상록어린이분관	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길 39(일동)		중앙도서관 단원여린이분관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길 109(초지동)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위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감골도서관</td> <td>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사동)</td> <td></td> </tr> <tr> <td>성포분관</td> <td>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528(성포동)</td> <td></td> </tr> <tr> <td>부곡분관</td> <td>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33(부곡동)</td> <td></td> </tr> <tr> <td>상록어린이도서관</td> <td>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로 15(일동)</td> <td></td> </tr> <tr> <td>중앙도서관</td> <td>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1(고잔동)</td> <td></td> </tr> <tr> <td>관산분관</td> <td>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원곡동)</td> <td></td> </tr> <tr> <td>단원어린이도서관</td> <td>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30(초지동)</td> <td></td> </tr> <tr> <td>안산동꿈을주는작은도서관</td> <td>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td> <td></td> </tr> <tr> <td>반월햇빛작은도서관</td> <td>안산시 상록구 남산평1길 10(갈곡일동)</td> <td></td> </tr> <tr> <td>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td> <td>안산시 상록구 영화5길 15(사동)</td> <td></td> </tr> <tr> <td>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td> <td>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3(원곡동)</td> <td></td> </tr> <tr> <td>신길샛별작은도서관</td> <td>안산시 단원구 새뜰길 55(신길동)</td> <td></td> </tr> <tr> <td>석수골작은도서관</td> <td>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9길 20(신부동)</td> <td></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비고	감골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사동)		성포분관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528(성포동)		부곡분관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33(부곡동)		상록어린이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로 15(일동)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1(고잔동)		관산분관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원곡동)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30(초지동)		안산동꿈을주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반월햇빛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남산평1길 10(갈곡일동)		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영화5길 15(사동)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3(원곡동)		신길샛별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새뜰길 55(신길동)		석수골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9길 20(신부동)	
명칭	위치	비고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길 197(고잔동)																																																															
중앙도서관 관산분관	안산시 단원구 도서관길 27(원곡동)																																																															
중앙도서관 성포분관	안산시 상록구 노직봉길 70(성포동)																																																															
중앙도서관 감골분관	안산시 상록구 문학길 1(사동)																																																															
중앙도서관 상록어린이분관	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길 39(일동)																																																															
중앙도서관 단원여린이분관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길 109(초지동)																																																															
명칭	위치	비고																																																														
감골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사동)																																																															
성포분관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528(성포동)																																																															
부곡분관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33(부곡동)																																																															
상록어린이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로 15(일동)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1(고잔동)																																																															
관산분관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원곡동)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30(초지동)																																																															
안산동꿈을주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반월햇빛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남산평1길 10(갈곡일동)																																																															
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영화5길 15(사동)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3(원곡동)																																																															
신길샛별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새뜰길 55(신길동)																																																															
석수골작은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9길 20(신부동)																																																															